

인터파크통영씨어터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 ‘갤러리 영’ 대관규정

제정 2019. 10.

개정 2020. 03.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인터파크통영씨어터'(이하 '운영사')가 운영하는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로 195) 내 갤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운영시간 및 휴관

①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 갤러리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화요일~일요일 10:00-22:00
2. 대관 내용과 기획에 따라 규정 내 운영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 시간 조율이 가능하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정기휴관)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
3.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 시
4. 기타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제 3 조 대관신청 기준

대관은 이용일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용 예정 기간이 공실일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제 4 조 대관기간

대관기간은 이용기간 외에 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다.

제 5 조 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인은 대관 신청시 '대관신청서', '전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플랫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를 하거나 또는 작품변경을 2 회 이상 한 단체 또는 개인
4.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5.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전시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6. 상품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인 경우
7. 기타 전시의 내용, 수준이 통영리스트ार्ट플랫폼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제 6 조 대관승인

- ① 운영사는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 [대관승인서, 대관불가통지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 ② 운영사는 대관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운영사와 대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7 조 대관승인취소 및 신청자격제한

-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운영사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2. 운영사가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대관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운영사의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5. 전시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6.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관 취소의 경우 기납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전시에 임박하여 대관취소를 할 경우에는 다음 대관 시 제5조에 의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 8 조 대관료

- ① 무료대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청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1일 33,000원(VAT 포함)을 기본으로 한다.
- ② 사용료는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사용시작 일까지의 합산일이 10일이 안될 경우 대관승인서에 별도 명시한 날짜를 입금기한으로 한다.
- ③ 대관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될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 ④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 행사의 경우 우선·무료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
- ⑤ 플랫폼 입주단체(창업랩, 지역창업커뮤니티센터, 창업카페) 주관 행사의 경우 내부검토 후 우선대관 및 무료대관을 진행할 수 있다.
- ⑥ 단, 우선대관 및 무료대관은 반드시 플랫폼과의 사전협의 및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기간 시설을 선점한 대관 건이 있을 경우 플랫폼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 대관료 반환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영사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통영리스타트플랫폼 내에서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② 운영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에 대하여 100% 반환)
- ③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해 대관일로부터 60일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운영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납부액의 50% 반환)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신청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제11조 대관내용 변경금지 및 대관취소

- ① 대관자는 대관신청시 명시한 내용(전시명, 전시일정 등)에 따라 전시를 진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영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전시준비기간이 시작된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중 전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관자는 대관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 ③ 운영사는 대관자가 갤러리 또는 부대시설사용에 있어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며 대관료를 부과한다.
- ④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9조에 의해 처리된다.
- ⑤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상당한 사유와 변경요청일이 대관 가능할 경우 당해년도에 한하여 일정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 전시 취소 및 중지

-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② 천재지변으로 전시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운영사는 취소된 전시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제13조 시설 및 설비 변경

- ① 대관자는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해야하며, 철거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운영사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운영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공간을 대관 전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제14조 안전교육 의무

- ① 대관자 및 전시 관련 갤러리 출입자는 대관 기간 중 플랫폼에서 10분 내외의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
- ②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플랫폼은 대관자의 전시 진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① 대관사용자가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법 제11조(특수장소의 방염)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운영사(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운영사는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대관사용자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안전점검은 운영사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⑥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운영사는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입장권 발권

- ① 대관자는 입장권 발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운영사와 협의해야 하며, 운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운영사는 전시장 운영을 위하여 지정된 일부 입장권 10매를 유보석으로 사용하며,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③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 또는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행할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으며, 운영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사는 전시장 입장을 제한,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광고 홍보물 협의

- ① 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통영리스타트플랫폼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사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② 대관자가 통영리스타트플랫폼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한다.

제18조 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19조 규정위반시의 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운영사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사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20조 관할 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운영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